

영남대학교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자체 관리 운영 지침

제정 2021.02.01.

제정 2021.08.31.

제정 2022.01.3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및 ‘영남대학교 외부연구관리지침’에 의거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교육연구단 조직, 운영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연구단이라 함은 미래인재양성사업, 혁신인재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대형의 교육연구단위를 말한다.
2. 교육연구팀은 미래인재양성사업을 수행하는 소형의 교육연구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에 선정된 영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소속 교육연구단 및 교육연구팀(이하 “교육연구단”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 2 장 조 직

제4조(교육연구단 명칭) 본교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연구단을 둔다.

1. IT에너지 소재공정 미래 화공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2. 글로벌 동아시아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
3. 영남 미래자동차 혁신인재양성 사업단

4. 글로벌 신약 개발 맞춤형 미래인재 교육연구팀
5. 광·전기화학 기반 에너지 소재 인력 양성팀
6. 미래형 전기에너지 융합 제어기술 사업팀
7. 모빌리티 산업 기반 소재 부품 미래인재양성 교육연구팀
8.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신뢰성 인공지능 SW 시스템 융합 교육연구팀
9. 4차 산업 적합형 지역 인재 교육팀
10. 프로보노형 지역교육혁신 인재 양성팀
11. 지역재생을 위한 문화유산 큐레이팅팀
12. 초 연결사회 대응 광 나노 기반 미래 전문 인력 양성팀

제5조(운영위원회) ① 교육연구단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교육연구단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교육연구단장이 위원장이 된다. +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교육연구단장
2. 교육연구단의 예산 및 결산
3. 교육연구단의 규정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연구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자체평가위원회) ① 교육연구단장은 사업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며, 연 1회 이상 교육연구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 및 부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육연구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교원 및 사업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를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연구단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평가 위원회에서 수행한 자체평가 결과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결과 발생한 문제점 보완 및 사업의 발전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인력 채용) ①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인력을 채용 할 수 있다. 채용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 채용에 의하고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② 정원 및 보수는 당해연도 세출예산 내에서 [별표5] 인건비 지급 평가 기준 결과에 따라 아래표의 등급별로 지급한다.

등급	평점(50점 만점)	연봉액 인상률
A	47점 이상	15% 이내
B	42점 이상 47점 미만	10% 이내
C	37점 이상 42점 미만	5% 이내
D	30점 이상 37점 미만	동일

③ 채용의 결격사유,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본교 직원 채용 규정을 준용한다.

④성과급은 [별표6]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에 따라 연 1회 지급 할 수 있다.

제 3 장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제8조(참여대학원생 정의)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신청 학과(부)에 소속되어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全日制)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제외),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9조(지원대학원생 정의)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연구 실적 등 평가를 거쳐 선발된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단, 미래인재양성사업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연구단과 혁신인재양성사업의 교육연구단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수의 70%를 초과하여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없다.

제10조(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참여대학원생은 학기별로 연구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고, [별표1] 지원대학원생 선발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첫 학기에 한해서 평가 없이 선발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장학금 지원 기준) 지원대학원생은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고 휴학, 자퇴, 학기 중 취업 등의 사유로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한다. 단, 졸업일이 포함된 월은 해당 월 말일까지 연구에 전념했다는 연구단(팀)장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구비 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참여인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해 매년 3월 및 9월 인건비는 참여인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해 구비서류 확인 후 소급하여 지급 할 수 있다.

1. 입학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석사수료생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00만 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월 140만 원 이상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월 140만 원 이상

제12조(성과급 지급 기준) 참여대학원생은 [별표2]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참여 기간 내 기여한 성과로 평가받는 경우 평가 시점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지급 가능하다.

제 4 장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제13조(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이하 참여교수라고 한다.)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임용되어 해당 대학에서 근무기간을 전일제(全日制)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또는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한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하고, 학사과정의 학과와 대학원과정의 학과가 동일한 소속이어야 하며, 동일한 소속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업 신청 당시의 대학원과정의 학과에 전임으로 발령받아야 한다. 단, 혁신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된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는 해당 학과(융합전공 포함)에 겸임으로 발령받을 수 있다.

제14조(참여교수 평가 기준) 참여교수 평가는 연구 영역과 대학원생 지도역량 항목으로 평가한다.

1. 논문은 SCI(E)에 등재된 것으로 최근 3년간 출판된 논문의 건수
2. 최근 1년간 등록된 특허 건수
3. 세부사항은 [별표3] 자체평가표를 따라 결정한다.

제15조(참여교수 선정 기준) 참여교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1. 참여교수 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2. 매 학기 시작 전 자체평가표 결과 및 기존 참여교수 회의를 통해 선발 한다.

제16조(참여교수 교체 기준) 참여교수의 교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참여교수 자체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1. 연구 실적 및 사업 참여 실적 저조

2. 1년을 초과하는 국외 기관 파견, 연구년으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중대한 건강 이상 및 사망 등 정상적인 연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 5 장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기준

제17조(성과급 지급 기준) 당해 연도 사업 종료 약 1개월 전 전체 참여교수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1. 책정된 국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실적 인정 기준은 당해 연도 사업기간으로 한다.
3. 성과급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별표4]에 따른다.
4.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급액은 전체 성과급 예산에서 아래표의 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등급	S	A	B	C	D
지급 비율	50%	30%	20%	0%	

제 6 장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 인력 활용 지침

제18조(신진연구인력) ① 교육연구단장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고,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2. 인건비는 월 3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퇴직금 및 4대보험(개인)법정부담금을 포함하고, 4대보험(기관)법정부담금은 당해 산출에 따라 본교로 납부한다.
 3. 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 최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1차년도 및 8차년도는 최소 6개월 이상 계약할 수 있다.
- ② 신진연구인력은 소속 교육연구단에서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 ③ 성과급은 [별표6]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에 따라 연 1회 지급 할 수 있다.
- ④ 신진연구인력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총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⑤ 경조휴가, 병가, 공가, 공로 및 포상휴가는 연차휴가 일수 산정에 있어 출근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산학협력전담인력) ① 교육연구단장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전담 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고,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성, 대학 자체 기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할 수 있으며, 4대보험(기관)법정부담금은 당해 산출에 따라 본교로 납부한다.

3. 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 최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1차년도 및 8차년도는 최소 6개월 이상 계약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전담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성과급은 [별표6]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에 따라 연 1회 지급 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전담인력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총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경조휴가, 병가, 공가, 공로 및 포상휴가는 연차휴가 일수 산정에 있어 출근 한 것으로 본다

제 7 장 국제협력경비 관련 지침

제20조(국제학술회의 발표(국제 전시회 출품 포함) 지원 기준) 교육연구단장이 교육을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인력에 대한 논문 발표 및 참가, 국제 전시회 출품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국제학술회의 기준 충족 기준

* 과학기술 분야: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인문사회 분야: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국제전시회: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출품작 10편 이상, 출품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2. 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확인 및 작성

3. 지원 대상

* 참여대학원생: 발표별 논문 저자 중 3인 이내 또는 지정토론자

*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전담인력

* 교수: 지도학생이 발표 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동행 가능

4. 단순참가는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중 총 3인 이내로 가능하다.
5. 지원 경비는 예산 범위에 따라 조정 가능 하다.
6.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는 제외한다.

제21조(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교육연구단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발된 참여대학원생에게 해외 공동 연구 수행 및 교육과정 참여 등을 위해 관련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해당 월 장학금과 30일을 초과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가하다.

1. TOEFL 550점 이상 혹은 이에 상응하는 어학능력자
2. 연구 능력 및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3. 박사학위 논문 준비생(우선권)
4. 연수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연구단장의 평가를 통해 선발된 1인 [별표7]

제22조(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지침)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외학자를 초빙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해외 소재 대학 및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2. 해당 연구 분야의 저명도를 평가하여 초빙한다.
3. 초빙된 해외학자는 교육연구단에 도움이 되는 공동연구수행, 자문 등의 활동을 해야한다.
4. 지원은 국내 실 입국 기간 동안만 가능하며, 초빙 수당 외 항공비, 체제비는 대학(국내)여비 규정에 따른다.
5. 초빙 수당은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외화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장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과 개별 교육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교육연구단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효력) 이 규정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이 중단 또는 종료된 때에는 폐지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수행한 교육연구단의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1] 지원대학원생 선발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세부 사항(배점)	실적 기간	평가 비율
대학원 성적	평점 평균	4.0(10점), 3.5이상(6점), 3.5미만(0점)	직전 학기	20%
논문게재 (최대 15점)	제 1저자인 경우(편당 3점) 제 1저자가 아닌 경우(편당 2점)		최근 1년	15%
학술대회 (최대 15점)	국제: Oral (건당 2점), Poster(건당 1점)		직전 학기	15%
기여도	사업 수행 활동 및 참여도(50점) - 산학ECP 과제 및 경진대회 - 세미나 및 행사 참여 - (기타활동 추가 예정)		직전 학기	50%
합 계	총 _____점 / 100점			100%

※ 신입생의 경우 최초 1학기에 한해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급 가능.

※ 논문 및 학술대회는 해당 실적 제출

[별표2]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세부 항목(배점)	실적기간	평가비율
연구 활동	- 연구과제 참여도(10점) - 연구윤리의식수준(10점) - 업무지식수준(10점) - 문제해결력(10점)	당해 연구기간	40%
연구 기여도	- 연구 및 수상 실적(60점)		60%
합 계	총 _____점 / 100점		100%

■ 성과급 지급액

종합평가 등급	점 수	성과급 지급비율 (당해년도 성과급 예산 내)
S	100점 ~ 80점	50% 이내
A	80점 미만 ~ 60이상	30% 이내
B	60점 미만 ~ 40이상	20% 이내
C	40미만	0%

■ 평가 세부항목

평가항목	점수
사업단보직(단장 및 부단장, 기획위원)	최대 15점
논문게재 실적 (매년01월~12월 기준)	1 ~ 10 : 5점 11 ~ 30 : 10점 31 ~ 50 : 15점
특허, 기술료, 사업화 실적 (매년01월~12월 기준)	1~5 : 5점 6~10 : 10점
사업과제 참여 및 기여도	40점
연구윤리의식수준	10점
문제 해결력	10점
합계	100점

[별표5] 행정인력 인건비 지급 평가 기준

직원 근무 성적 평정서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소 속	계약기간	직원 구분	최초 계약일

1. 담당업무

-

-

-

-

-

-

2. 근무실적 평가(50점)

연번	평가요소	요소별점	정 의	평가점수
1	전문지식 성과창출	15점	· 맡은 업무에 해박한 전문 지식을 갖고 향후를 예측하여 업무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고 실현한다.	
2	담당업무 질과 양	13점	·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많고, 복잡하면서도 어려운 업무를 착오없이 적절히 대처하고 충실히 수행한다.	
3	적시성	8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시간 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4	창의성	8점	·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시각을 갖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5	노력도	6점	·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인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한다.	
총 점(50점 만점)				

1) 총점은 각 평가점수를 합산

3. 직무수행 태도 평가(50점)

연번	평가요소	요소별점	정 의	평가점수
1	고객 수혜자지향	15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수혜자(구성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2	성실성	13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팀워크	8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4	협상력	8점	· 상대방의 의도를 적절히 파악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득한다. ·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조정을 한다.	
5	의사 전달력	6점	·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논점이 빠지지 않도록 문서를 만든다. ·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말로 설명을 한다.	
총 점(50점 만점)				

1) 총점은 각 평가점수를 합산

4. 종합평가

종합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등급 : 급	근무 실적	
점수 : 점	직무 수행 태도	

※ 점수는 직무수행 태도평가 점수와 근무실적 평가점수를 합산후 2로 나눈 평균값 기재

※ 종합평가 점수별 등급표

종합평가 등급	점수(50점 만점)	비 고
A	47점 이상	
B	42점 이상 47점 미만	
C	37점 이상 42점 미만	
D	30점 이상 37점 미만	

5. 평정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인)
----	--	--------	--	----	-----

[별표6]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전담인력, 행정전담인력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세부 항목(배점)	실적기간	평가비율
연구 활동	- 연구과제 참여도(10점) - 연구윤리의식수준(10점) - 업무지식수준(10점) - 문제해결력(10점)	당해 연구기간	40%
연구 기여도	- 연구 실무 수행(20점) - 성과 관리 및 보고서 작성(20점) - 산업체 발굴 및 취업 연계(20점)		60%
합 계	총 _____점 / 100점		100%

[별표7] 장기해외연수 선발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세부 항목(배점)			평가 비율
학업 성적	평점 평균 (직전학기)	<input type="checkbox"/> 50	<input type="checkbox"/> 30	<input type="checkbox"/> 10	50%
연구 능력	논문 학술대회 참여 등	<input type="checkbox"/> 25	<input type="checkbox"/> 15	<input type="checkbox"/> 5	25%
외국어 능력	공인어학성적 (최근 2년 이내)	<input type="checkbox"/> 25	<input type="checkbox"/> 15	<input type="checkbox"/> 5	25%
합 계	총 _____점 / 100점				100%